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5. 19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5월 1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5월 18일 제64회(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 가.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 미근거 규제의 정비 및 규제 법령의 폐지·완화가 필요하여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대형폐기물처리신고의 일원화(안 제8조제2항)
  - 폐기물처리업자·봉투판매인과 계약체결시 후불제를 원할 경우 손실보전, 세입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확보수단 신설(안 제23조의2)
  - 봉투 현금교환시 교환확인서 발부 폐지(안 제24조제2항, 제3항)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본 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개혁법에 의거 규제의 정비에 근거하여 법령의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내용, 불합리한 내용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2
------------	----

제출년월일 : 1999. 5.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 미근거 규제의 정비 및 규제 법령의 폐지·완화가 필요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2.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처리신고의 일원화(안 제8조제2항)

- 폐기물처리업자·봉투판매인과 계약체결시 후불제를 원할 경우 손실보전, 세입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확보수단 신설(안 제23조의2)
- 봉투 현금교환시 교환확인서 발부 폐지(안 제24조제2항, 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99폐기물관리 주요업무처리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이견 없음.

라.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제5호중 “관할 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관할 동장”으로 한다.

제23조의2(채권확보) ①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봉투공급에 대한 후납제의 경우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정보증인은 서울시내 거주자로서 1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세자로 하며, 보증보험금액은 계약일전 2개월간 공급한 규격봉투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봉투 판매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일 기준 최근 2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 대금의 총액에 따라 “별표6”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 제2항과 관련 “별표6”을 신설한다.

제24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준속기한설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5년을 준속기한으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 (안)
<p>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3 (생략)</p> <p>4. 대형폐기물 :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관할 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u>관할 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u>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배출</p> <p>5. ~ 6. (생략)</p> <p>③ (생략)</p>	<p>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p> <p>① &lt;삭제&gt;</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대형폐기물 : .....</p> <p>.....</p> <p>... <u>관할 동장에게</u> .....</p> <p>..... <u>관할 동장이</u> .....</p> <p>.....</p> <p>5. ~ 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제23조의2(채권 확보)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봉투공급에 대한 후납제의 경우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정보증인은 서울시내 거주자로서 1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세자로서 하며 보증보험금액은 계약일전 2개월간 공급한 규격봉투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봉투판매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급받은 규격봉투대금의 총액에 따라 “별표6”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 중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소에서 한다.</p> <p>② 동장은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봉투판매인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반드시 교환하여야 한다.</p>	<p>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 (현행과 같음)</p> <p>② &lt;삭제&gt;</p> <p>③ &lt;삭제&gt;</p>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별표6]</p> <p style="text-align: center;">봉투판매소 구비서류 (제23조의2 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비   서   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padding: 5px;">보증인 설정의 경   우</td> <td style="padding: 5px;">서울시내 거주자로서 연 100,000원 이상 재산세 납세자 1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1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padding: 5px;">보증보험 가 입 의 경   우</td> <td style="padding: 5px;">                     계약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대금의 총금액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증권 1매                       - 1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 : 200만원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 : 300만원                      - 300만원 이상 - 보험가입금액 : 400만원                       ※ 계약일 현재 규격봉투대금이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400만원으로 하며, 신규 계약하는 판매소는 인근 판매소에 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td> </tr> </tbody> </table>	구   분	구   비   서   류	보증인 설정의 경   우	서울시내 거주자로서 연 100,000원 이상 재산세 납세자 1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1부	보증보험 가 입 의 경   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대금의 총금액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증권 1매  - 1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 : 200만원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 : 300만원 - 300만원 이상 - 보험가입금액 : 400만원  ※ 계약일 현재 규격봉투대금이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400만원으로 하며, 신규 계약하는 판매소는 인근 판매소에 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구   분	구   비   서   류						
보증인 설정의 경   우	서울시내 거주자로서 연 100,000원 이상 재산세 납세자 1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1부						
보증보험 가 입 의 경   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대금의 총금액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증권 1매  - 1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 : 200만원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 : 300만원 - 300만원 이상 - 보험가입금액 : 400만원  ※ 계약일 현재 규격봉투대금이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400만원으로 하며, 신규 계약하는 판매소는 인근 판매소에 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